

# 대학평의원회규정

2006.09.11. 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혁제학원 정관 제35조의 2 및 제 35조의 8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(이하 '평의원회'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평의원회는 총 11인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대학평의원(이하 '평의원' 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1. 교원 대표 4인
2. 학교 직원 대표 4인
3. 학생 대표 2인
4.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

②제1항 1호, 2호 및 3호를 대표하는 평의원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되, 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각 단위 별로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.

③제1항 4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전 3개호의 단위구성원이 아닌 자 중에서 학교법인 직원이나 동문을 포함하여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1인을 위촉한다.

**제3조(평의원의 임기)**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단, 학생 대표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평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의원의 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1. 교원, 직원 또는 학생 대표의 임기가 만료된 때
2. 교원, 직원 또는 학생 대표의 직을 사임하거나 상실한 때
3. 교원, 직원 또는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때

③제2항의 결원에 따른 후임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4조(임원)** ①평의원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의장 1인
2. 부의장 1인
3. 간사 1인

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
**제5조(임원의 임무)** ①의장은 평의회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간사는 의장이 정하는 회무를 처리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평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.

②정기회는 매년 3월 및 9월에 의장이 소집한다.

③임시회는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④의장은 평의회회의 일시 및 의안을 늦어도 3일 전에는 평의원에게 통지한다.

**제7조(정족수)** 평의회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**제8조(출석 및 자료제출)** ①총장은 평의회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관계 교·직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②의장은 관계 교·직원에게 평의회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교·직원이나 총장은 평의회회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심의사항)** ①평의회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6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.

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
5. 임시이사 선임 및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
6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평의회회는 제1항 각호 이외의 평의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**제10조(개방이사의 추천)** ①의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추천 의뢰를 받은 경우 3일 이내 동 사실과 개방이사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평의원에게 서면 통지한다. 평의회회에서 추천하여야 하는 후보의 수는 선임되어야 할 개방이사 수의 2배수이어야 한다.

②의장은 30일 이내에 추천 결과를 법인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적합

한 날짜를 정하여 평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③평의원회에서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0일을 경과하면 의장은 법인에서 관할청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평의원회에서 감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앞의 3개 항을 준용한다.

**제11조(회의의 공개)**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, 학생 또는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심의결과 통보)** ①의장은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
②총장은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집행할 때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심의기간)** ①총장은 특정 의안에 관하여 의장과 협의하여 심의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②평의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간을 존중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운영위원회)** ①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의장, 부의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조 제1항 각호의 평의원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.

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평의원회의 회의 일시
2. 평의원회의 회의 의안
3. 평의원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
4. 평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5. 그 밖의 평의원회 운영

**제15조(직원)** 평의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원 1인을 둘 수 있다.

**제16조(예산지원)**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에 수당 등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7조(운영규칙)**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.

제18조(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